

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

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|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      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| ④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<br>(전화번호: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과세연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부터      년 월 일까지        |
|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해당 과세연도<br>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| ⑦ 직전 과세연도<br>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| ⑧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<br>(⑥-⑦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⑨ 해당 과세연도<br>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| ⑩ 직전 과세연도<br>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| ⑪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<br>(⑨-⑩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⑫ 해당 과세연도<br>상시근로자 수      | ⑬ 직전 과세연도<br>상시근로자 수      | 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<br>(⑫-⑬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공제세액 계산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⑮ 공제대상 인원<br>[Min(⑧,⑪,⑭)] | ⑯ 1인당 공제금액                | ⑰ 공제세액<br>(⑮×⑯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5제11항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  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### 작성 방법

1.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,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  - 가.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: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/ 과세연도의 개월 수
  - 나.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: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/ 과세연도의 개월 수
  - 다. 상시근로자 수: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과세연도의 개월 수
2.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. 다만,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합니다)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.
3.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전체 정규직 근로자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.
  - 가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
  - 나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
  - 다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
  - 라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
4.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.
  - 가.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. 다만,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.
  - 나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.
  - 다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  - 라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와 그 배우자
  - 마.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
  - 바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,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
5. ⑯ 1인당 공제금액란에는 2017.4.18.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1,000만원, 중견기업은 700만원, 그 외 기업은 300만원을 초과 그 이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500만원, 그 외 기업은 200만원을 적습니다.